

변경 대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재형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
-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
-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. 02. 24.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하나UBS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2.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3. <u>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 4.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채권] 	<p>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하나UBS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2.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3.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채권]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가. (생략) 나. <u>하나UBS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</u> 및 <u>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 (제1호)[채권]</u>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가. (생략, 현행과 동일) 나. <u>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채권]</u>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

	<p>(신탁재산의 70% 수준까지) <u>국내채권</u> 모펀드, <u>유동자산 투자비중</u> 확대 (신탁재산의 30% 수준까지)</p> <p>3. 운용전문인력 (생략)</p>	<p>(신탁재산의 70% 수준까지) <u>인Best연금</u> 모펀드, <u>유동자산</u> 투자비중 확대 (신탁재산의 30% 수준까지)</p> <p>3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</p>
--	---	---